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73

발의연월일: 2021. 6. 22.

발 의 자: 우원식 · 이학영 · 송옥주

진성준 • 박상혁 • 오영환

남인순 · 박영순 · 허 영

윤후덕 • 민병덕 • 정필모

주철현 · 김원이 · 박홍근

이수진 • 조오섭 • 김경만

홍성국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이자 비영리법인으로, 구조적으로 자금조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,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원 회비와 차입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6조제8항에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, 대기업, 금융기관 등 자금 출연 시세제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(중소벤처기업부,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)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금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이 「대・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』제2 조제3호 또는 「자유무역협정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9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 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 만,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 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 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생 략) <신 설> 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「중소기업협동조합

	법」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
	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
	그품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